

순천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운영 규정

제정 2015. 10. 15.

개정 2018. 3. 3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 학칙 제5조의5에 따라 순천대학교 학부교육선도 선도대학 육성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순천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단(이하 “ACE사업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교양 및 전공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2. 비교과 교육과정의 운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3. 교육지원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4. 교육의 질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5. 그 밖의 ACE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3조(사업단장 등의 임무) ① ACE사업단장(이하 “사업단장”이라 한다)은 이 대학교의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(이하 “ACE 사업”이라 한다)을 총괄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ACE사업단에 사업단장을 보좌하기 위해 ACE사업부단장(이하 “부단장”이라 한다) 1명을 두며, 부단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하부조직) ① ACE사업단에 교양교육혁신센터, 전공교육혁신센터, 비교과교육혁신센터,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학부교육효과성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.

② 각 센터장은 이 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행정실장은 이 대학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교양교육혁신센터장은 ACE 사업의 교양교육에 관한 기획 및 조정,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④ 전공교육혁신센터장은 ACE 사업의 전공교육과 학사제도 개선 등에 관한 기획 및 조정,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⑤ 비교과교육혁신센터장은 ACE 사업의 비교과교육에 관한 기획 및 조정,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⑥ 교수학습지원센터장은 ACE 사업의 교수학습에 관한 기획 및 조정, 성과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⑦ 학부교육효과성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ACE 사업의 학부교육 효과성 관련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ACE 사업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
3. ACE 사업의 성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
4. 이 대학교 학부교육의 효과성 분석 등에 관한 사항

⑧ 행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ACE사업단 운영 및 관리 지원
2. ACE사업단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
3. 그 밖의 ACE사업단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

⑨ 각 센터와 행정실에는 이 대학교 소속 교직원과 ACE 사업 국고지원금 재원으로 전담직원(연구원 등)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사업추진위원회) ① ACE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ACE사업추진위원회(이하“사업추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사업추진위원회는 총장, 사업단장, 부단장, 교무처장·학생처장·사무국장·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단과대학장 2명, 교양융합대학장, 총학생회장 및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 인사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총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 (개정 2018. 3. 30.)

③ 사업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ACE 사업 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ACE 사업 계획의 주요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
3. ACE 사업비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4. ACE 사업 운영 관련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
5. 그 밖에 ACE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

④ 사업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ACE 사업에 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ACE 사업 자체평가위원회(이하“자체평가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기획처장과 총장이 임명하는 이 대학교 전임교원과 학생대표 및 외부인사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

③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ACE 사업 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
2. ACE 사업 성과지표 적정성 및 성과 달성에 대한 평가
3. ACE 사업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실시
4. ACE 사업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조치 등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ACE 사업 자체평가 및 컨설팅 제공에 관한 사항

④ 자체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ACE 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 및 성과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ACE

사업 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, 부단장과 ACE사업단 각 센터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부서의 장 또는 부처장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단장이 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ACE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
2. ACE 사업 실행 계획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
3. ACE 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
4. ACE 사업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
5. ACE 사업 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ACE사업단 관련 규정과 지침 등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ACE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
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8조(실무추진위원회) ① ACE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ACE 사업 실무추진위원회(이하“실무추진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추진위원회는 사업단장, 부단장과 ACE사업단 행정실장 및 총장이 임명하는 과장 또는 행정실장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

③ 실무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.

1. ACE 사업 세부 추진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ACE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부서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

④ 실무추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9조(사업 실행부서) ① ACE 사업 국고지원금을 지원받아 분야별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(이하 “사업 실행부서”라 한다)는 ACE 사업계획에 따라 분야별 담당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사업 실행부서가 담당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세부 실행계획 등을 수립할 때는 ACE사업단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사업 실행부서는 담당 사업을 완료 후 그 결과를 ACE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사업 실행부서는 ACE 사업 계획서 작성과 결과보고서 작성 및 각종 평가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하여 ACE사업단 및 자체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자체평가) ①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부가 ACE 사업에 관한 성과평가·연차평가·중간평가 등을 실시하기 전에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, 그 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자체평가 실시 결과를 사업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사업단장은 자체평가위원회의 자체평가 결과 부진사항 등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11조(사업계획 및 성과평가 결과 공개) 사업단장은 ACE 사업 계획 및 연차별 성과평가 결과 등을

이 대학교 홈페이지와 사업위탁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2조(재정 및 회계) ① ACE사업단의 재정 수입금은 국고지원금과 대학 자체지원금으로 한다.

② ACE 사업 국고지원금은 이 대학교 대학회계의 별도 계정(ACE사업단)으로 운용하여야 한다.

③ ACE사업단 회계는 이 대학교 대학회계 관련 규정, 교육부 등의 ACE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며, 사업단장은 ACE사업단의 사업비 집행 지침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3조(수당 등 지급) ① 사업추진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부인사 및 학생에 대해서는 회의 참석 수당 또는 소정의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ACE사업단 사업비 집행지침 등에 따른다.

제14조(운영세칙 등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ACE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15. 10. 15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·수행한 ACE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(2018. 3. 30.) (순천대학교 학칙)

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 개정)

①부터 ④까지 생략

⑤ 순천대학교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교양기초교육원장”을 “교양융합대학장”으로 한다.

⑥부터 ⑩까지 생략

제3조(모집단위 변경에 관한 적용례) <생략>